

20.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9-167호 1999. 5. 17.

1.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령(안)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제고와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공포(1999. 3. 31. 법률 제5,957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개법인의 임원중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도록 한 것을 3인 이상으로하여 임원요건을 완화함.
- 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승인제가 신고제로 개선됨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 절차를 정함.
- 다. 중개법인이 중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상에 법인의 대표자(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해 중개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날인하도록 하여 중개책임을 명확히 함.
- 라. 중개업자 등에 대한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은 폐지되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마. 중개업자의 협회설립 및 가입이 자유롭게 개선됨에 따라 협회의 회원등록절차 · 대의원의 수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함.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부동산중개업허가제도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제로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정함.
- 나.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및 해고할 경우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둘 경우에는 중개보조원명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토록 함.
- 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으로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허가관청에 승인신청하던 것을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
- 마.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전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을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서류 및 지정절차를 정함.